

의안번호	2208156
의 퇴 인	권영진의원
회 답 일	2025.4.28.
추 계 번호	25B08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3,020만원, 2030년 1억 4,95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억 270만원(연평균 1억 4,05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30.2	135.9	141.0	146.1	149.5	702.7	140.5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장래에 발생할 유산·사산 건수 발생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함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제1항) 1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¹⁾에 따라 사용자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보건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제외)을 제외하고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²⁾에 근거하여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휴가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8155호)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에 지급기간과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원대상은 피보험자가 속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추정해야 하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혼인률 및 배우자의 유산·사산 여부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추계서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를 토대로 산출

[표 2] 출생아 수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아 수(A)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00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B)	18,720	18,270	16,168	15,797	18,241
비율(C=B/A×100)	6.9%	7.0%	6.5%	6.9%	7.7%

주: 2024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2024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7.7%)을 적용하여 산출

[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A, 천명)	229	239	248	257	263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B=A×7.7%, 명)	17,529	18,295	18,983	19,672	20,132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사업대상자는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에 2024년 근로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 대비 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3.08%)”을 준용하여 산출
- 본 추계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배우자의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의 발생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 대비 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장래에 발생할 유산·사산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³⁾

3)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유·사산건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분만 및 유산·사산 관련 수가 코드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로 고용보험 가입률 등과 무관한 특징이 있음

[표] 유·사산 진료 현황

(단위: 건수, 명)

연도	출산건수(A)	유산·사산 실인원(B)	C=B/A
2020	269,736	95,867	35.5%
2021	257,381	92,225	35.8%
2022	245,214	89,474	36.5%
2023	227,795	85,234	37.4%
2024	235,234	87,915	37.4%

[표 5]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A)	17,529	18,295	18,983	19,672	20,13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B=A \times 3.08\%$)	540	563	585	606	620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급기간) 3일⁴⁾

- 개정안은 권영진위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지급단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원단가는 2025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⁵⁾」를 토대로 산출

- 본 추계서는 2025년 기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607,650원/20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산출

□ 추계결과,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3,020만원, 2030년 1억 4,950만원 등으로 추계됨

주: 1. 출산건수는 유도분만 등 분만 관련 행위수가 코드로 청구된 연도별 진료건수와 실환자수 등을 토대로 산출한 자료이며, 유산·사산 실인원은 자궁외임신 등 각 상병으로 청구된 기준 연도별 진료건수와 실환자수를 토대로 중복을 제거한 인원 수입

2. 발체시점 및 후속 청구 등에 따라 수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155호)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유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표 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A, 명)	540	563	585	606	620
1일당 지원단가(B, 원)	80,383	80,383	80,383	80,383	80,383
지급일수(C, 일)	3	3	3	3	3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30.2	135.9	141.0	146.1	149.5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장래에 발생할 유산·사산 건수 발생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주요 전제와 장래에 발생할 출산율, 유산·사산의 발생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등이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지급단가가 일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향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산정기준 및 상·하한액 등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 될 경우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